

# 교원업적평가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본 대학' 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전임교원(이하 '교원' 이라 한다)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.

② 전임교원이라 함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를 말한다.

③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업적평가의 원칙)** 교원의 업적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한다.

## 제 2 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

**제4조(평가대상기간 및 시기)** ①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1일에서 당해연도 11월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.

② 평가 시기는 매년 12월로 연1회 평가한다.

**제5조(업적평가기구)** 교원업적의 평가를 위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'평가위원회'이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평가위원회 구성)**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행정부총장, 정책부총장,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교수 3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

**제7조(교원업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)** ① 본 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평가 대상기간의 업적을 매해 연도 11월30일까지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 및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평가절차)** ①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을 수합·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상정된 교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,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총장은 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주무부서는 업적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

**제9조(이의신청 및 처리)** ① 교원은 정량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와 재심청구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한 것은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. 단, 제출서류에 대한 미비

등 심사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청구가 불가하다.

② 평가위원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, 주무부서는 그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재심을 청구한 교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평가영역 및 기준

**제10조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영역평가와 원(스쿨)영역평가로 구분한다.

- ① 개인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.
- ② 원(스쿨)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.
- ③ 삭제

**제11조(평가비율)** ① 원(스쿨)소속교수는 개인영역 60%, 원(스쿨)영역 40%로 평가한다.

② 리케이온 소속교수는 개인영역의 60%, 소속기관평가 40%로 평가한다.

**제12조(개인영역평가)** ① 개인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한다.

- ② 공통지표는 교육활동평가,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 등으로 평가한다.
- ③ 정성지표 설정을 위해 교수는 자기발전계획서를 매년 1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정성지표 설정은 교수와 해당 스쿨 원장 또는 학과장과의 상호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.
- ⑤ 정성지표 평가는 개인 업적결과를 기준으로 위원회와 원장 또는 학과장, 총장이 각각 결과중심으로 평가한다.

**제13조(원(스쿨)영역평가)** ① 원(스쿨)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한다.

- ② 공통지표는 재학생충원률, 산학지수, 신입생경쟁률로 평가한다.
- ③ 정성지표 설정을 위해 원(스쿨)에서는 원(스쿨)발전계획서를 매년 1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정성지표의 설정은 원(스쿨)발전계획 발표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평가위원회와 원(스쿨)간의 상호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.
- ⑤ 정성지표 평가는 원(스쿨)발전과 학교발전의 계획대비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위원회와 총장이 결과중심으로 평가한다.

**제13조의2(전공영역평가)** 삭제

**제14조(가점 평가)** 삭제

**제14조의2(평가조정)** 영역별 결과값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간법을 이용하여 평가값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조정여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업적평가 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평가대상자에게 개인 별 조정 전 원점수와 조정 후 점수를 모두 공개한다. 결과값이 구간값 사이일 경우 구간값을 보간법을 이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.

**제15조(세부평가기준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별 세부평가기준(별첨1)은 별도로 정하며, 기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업적평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기 타

**제16조(비밀유지)** 본 평가에 참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누설을 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**제17조(보칙)**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③ 삭제

**제18조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은 재적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

**제19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전임교원의 인사 및 보수산정의 기초자료, 우수교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- 이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- 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